

노동통계연구

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

강승복*

I. 서론

-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임금조사 통계
 - 국가지정통계(제34005호)로 승인되어 있으며 1990년 이후 매년 1,000개 표본사업체에 대해 조사
 - 조사대상은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
 - 조사기준월은 9월이며 보고서 발표는 매년 12월
- 노무비 산정을 위한 임금현황 파악이 주된 내용
 - 조사목적은 중소기업체의 임금수준 파악 및 국가와의 계약시 원가계산에 필요한 노무비 산정기준 자료로 활용
 - 조사내용은 중소기업체의 산업별, 직종별 임금현황과 임금결정형태(연봉제 등) 현황
 - 조사방법은 조사원의 내용 설명 후 해당사업체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작성

II. 조사연혁 및 개요

- 조사목적

*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(kangsb@kli.re.kr).

-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임금결정형태 등을 파악하여 노·시간 임금 교섭의 기초자료로 제공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제조업 부문 직종별 임금 (일급) 작성

○ 조사근거

- 통계법 제8조에 의한 국가지정통계(승인번호 제34005호)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(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)

○ 조사연혁

- 1990년 첫 조사를 실시한 이래 2002년 현재까지 15차례 조사
- 첫 조사 이후 조사주기 및 조사대상에서 1차례씩의 변경이 이루어짐.

<표 1> 중소기업 임금실태조사 변동연혁

	조사대상	표본사업체수	조사주기	비 고
1990	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	850개	반기	정부통계 제327-21-07호로 작성승인
1992	상동	상동	연간	조사주기 변경
1993	상동	상동	상동	정부통계 제34005호로 변경
1995	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	1,000개	상동	조사대상 및 표본사업체수 변경
2002	상동	상동	상동	

자료 :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, 『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』, 각호.

○ 조사기간 및 범위

- 조사기준일 : 매년 9월 30일
- 조사대상기간 : 매년 9월 1일~9월 30일
- 조사실시기간 : 매년 9월 27일~10월 19일
- 조사범위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중 상시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22,272개 업체(단, 담배제조업, 코크스·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,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은 제외)
- 조사대상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중 상시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1,000개 업체

○ 조사방법 및 항목

- 조사방법 : 조사원이 조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방법 설명 후 조사

대상업체의 응답자가 자가기입 방식으로 작성

- 조사항목 : 회사개요, 9월 급여액, 임금지급형태, 연봉제 현황 등

○ 표본설계

- 표본설계방법 : 층화단순임의추출법(Stratified Simple Random Sampling)
- 추출단위 : 사업체
- 표본틀 : 통계청의 「광공업통계조사결과」를 이용하여 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를 표준산업분류별, 종업원 규모별로 분류하여 표본틀 구성

○ 층화기준 및 대표변량

- 1차 층화 : 산업중분류 20개
- 2차 층화 : 종업원규모 3개
 - 1규모 : 종업원 20~49인
 - 2규모 : 종업원 50~99인
 - 3규모 : 종업원 100~299인
- 표본설계를 위한 대표변량은 「광공업통계조사」 자료의 종업원 1인당 연간급여액을 이용

○ 표본수 결정

- 「광공업통계조사」 결과 중 종업원 1인당 연간급여액을 이용하여 Neyman의 최적배분법에 의하여 허용오차(ϵ) 0.09, 신뢰도 95%로 산업중분류별 표본사업체수를 결정하고, 이를 종업원 규모별로 표본사업체수 1,000개를 결정

- 한국표준산업중분류별 표본사업체수 결정 :
$$n = \frac{(\sum N_6)^2}{(\frac{\epsilon}{t_\alpha} \times \sum NX)^2 + \sum N_6^2}$$

- 종업원 규모별 표본사업체수 결정 :
$$n_s = n \times \frac{N_6}{\sum N_6}$$

※ n : 한국표준산업중분류별 표본업체수

n_s : 한국표준산업중분류별, 종업원 규모별 표본사업체수

N : 모집단 사업체수

X : 각층의 종업원 1인당 급여액(평균급여액)

σ : 사업체 평균급여액의 표준편차

σ^2 : 사업체 평균급여액의 분산

$$\frac{\varepsilon}{t_a} : \varepsilon = \text{허용오차}, t_a = \text{신뢰계수}$$

<표 2> 산업종분류별 · 종업원 규모별 표본업체 현황(2002)

(단위 : 개)

	합 계		1규모 (20~49인)		2규모 (50~99인)		3규모 (100~299인)	
	N	n	N	n	N	n	N	n
D. 제조업	24,272	1,000	16,608	653	4,994	219	2,670	128
15. 음식료품	1,628	67	1,019	36	375	18	234	13
17. 섬유제품	2,653	40	1,780	27	606	9	267	4
18. 의복 및 모피제품	1,715	52	1,290	36	306	11	119	5
19. 가죽, 가방, 마구류 및 신발	598	52	434	35	98	12	66	5
20. 목재 및 나무제품	223	45	181	38	34	5	8	2
21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	555	38	379	22	110	10	66	6
22. 출판,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품	769	57	551	40	136	11	82	6
24. 화학물 및 화학제품	1,112	55	608	31	276	14	228	10
25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	1,824	52	1,313	34	358	12	153	6
26. 비금속광물제품	980	56	726	41	168	10	86	5
27. 제1차 금속산업	815	34	524	21	178	7	113	6
28. 조립금속제품	2,059	51	1,516	35	389	11	154	5
29.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	2,942	55	2,157	40	522	10	263	5
30. 사무, 계산, 회계용기계	336	55	225	32	76	15	35	8
31.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	1,427	50	939	33	313	10	175	7
32. 영상, 음향, 통신장비	1,548	56	940	33	366	14	242	9
33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	515	45	350	30	104	9	61	6
34. 자동차 및 트레일러	1,276	50	765	27	307	12	204	11
35. 기타 운송장비	474	46	302	32	128	10	44	4
36. 가구 및 기타제조	823	44	609	30	144	9	70	5

주 : N은 모집단 사업체수, n은 표본사업체수.

○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의 정의

- 2002년 9월 중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급총액을 총근로자수로 나눈 금액
-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의 범위는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, 생산장려수당,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이 포함.
-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은 1일 8시간, 월급제인 경우 1월 25일로 계산하여 산정

○ 급여체계의 정의

- 정액급여 : 단체협약, 취업규칙, 근로계약 등을 통해 통상근로에 대하여 일정요건

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(기본급+통상적 수당+기타수당)

- 기본급 : 급여산정의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시간급, 일급, 주급, 월급 등을 기본으로 지급하는 급여(본봉)
- 통상적 수당 : 일정요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(위험수당, 생산장려수당, 자격수당 등)
- 초과근로수당 : 정상근로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(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 등)

○ 급여지불형태의 정의

- 시간급제 : 1시간을 단위로 임률(임금산정의 기준)을 정하고,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·지급하는 임금형태
- 일급제 : 1일을 단위로 임률을 정하고,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·지급하는 임금형태
- 일당월급제 : 임금이 1개월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결근 등의 이유로 빠진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임금형태
- 월급제 : 임금이 월단위로 정하여져 있고 결근일수 등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산정·지급하는 형태
- 연봉제 : 임금이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·성과·공헌도를 평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연간임금이 결정되어 지급되는 형태

Ⅲ. 2002년 조사의 결과

◆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(일급)

- 2002년 9월 중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조사노임(일급)은 32,107원으로 나타나 전년의 29,445원보다 9.0% 상승
- 직종별 조사노임(일급)은 전기기사가 60,81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침공이 24,856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.
 - 조사노임 상위 10개 직종 : ① 전기기사 60,813원, ② 컴퓨터S/W기사 53,697원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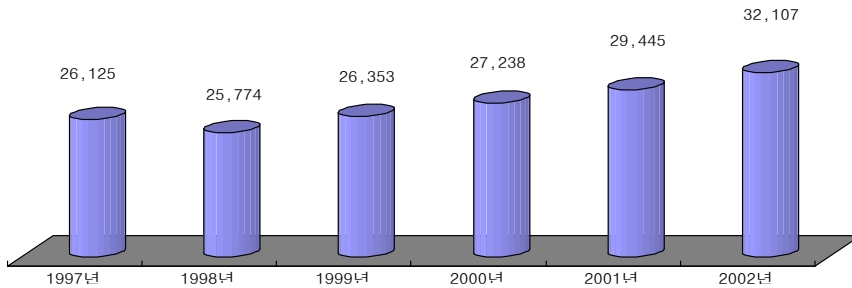
1) 동력재봉기 옆에서 부품공급 다듬질 및 부품손질을 하는 보조자

③ 안전관리사 50,421원, ④ 전기산업기사 49,376원, ⑤ 컴퓨터H/W기사 47,634원
 ⑥ 기계설계사 47,352원, ⑦ 회로설계사 47,149원, ⑧ 품질관리사 46,489원, ⑨ 조
 선목공 46,000원, ⑩ 무선안테나공 45,051원

－ 하위 10개 직종 : ① 하침공 24,856원, ② 가위절단공 25,819원, ③ 연사공 27,058
 원, ④ 물품포장공 27,283원, ⑤ 편직공, 27,306원 ⑥ 상침공 27,401원, ⑦ 관권공
 27,479원, ⑧ 제품검사공 27,504원, ⑨ 다듬질공 27,528원, ⑩ 보통인부 27,716원

[그림 1] 중소기업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(일급) 추이

(단위 : 원)



◆ 연봉제 도입현황

○ 2002년 9월 현재 중소기업의 연봉제 실시현황은 실시중 20.6%, 도입 예정 14.5%, 실시할 계획 없음 64.9%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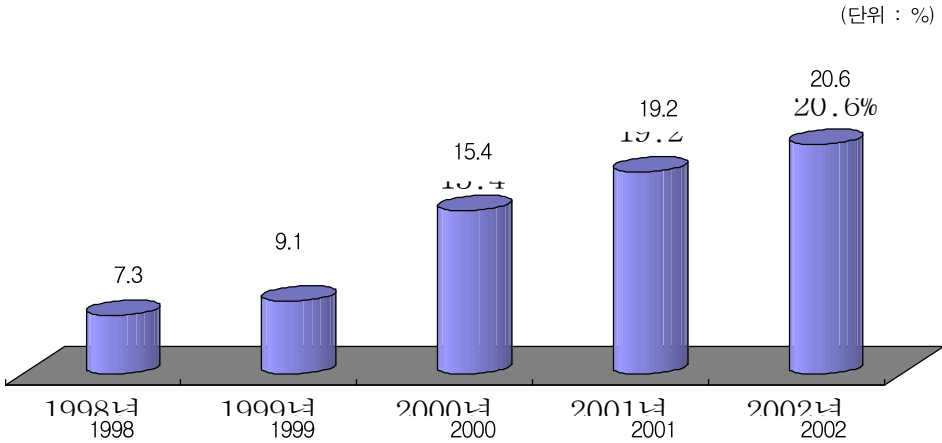
- － 지난해와 비교하여 실시중인 업체와 도입할 예정인 업체비율 모두 증가
- － 연봉제 실시중인 업체비율은 노조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3.2%포인트 높게 나타남.

<표 3> 중소기업 연봉제 실시현황

(단위 : %)

		실시중	도입 예정	계획없음
2001년(A)		19.2	12.9	67.9
2002년(B)		20.6	14.5	64.9
증감(B-A, %포인트)		1.4	1.6	-3.0
노 조	노동조합유(C)	23.5	10.6	65.9
유무별	노동조합무(D)	20.3	14.9	64.8

[그림 2] 중소기업연봉제 실시 추이



- 연봉제를 도입(예정)하고 있는 업체 중 1999년 이전에 도입한 업체는 12.2%, 2000~2002년 사이에 도입한 업체는 46.4%로 나타나 연봉제가 2000년 이후에 집중 도입 - 향후 도입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도입시기를 2003년 14.8%, 2004년 이후 26.5%로 응답

<표 4> 중소기업연봉제 도입시기(예정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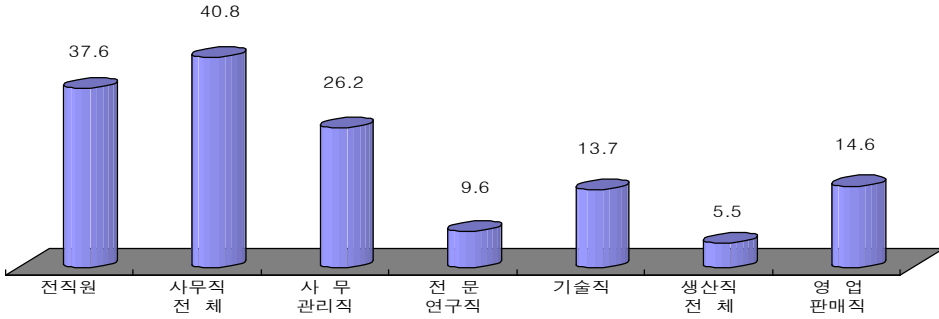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	1998. 이전	1999	2000	2001	2002	2003	2004. 이후
도입사업체 비율	7.1	5.1	16.2	16.0	14.2	14.8	26.5

- 연봉제 적용대상은 사무직 전체가 40.8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 전직원 37.6%, 사무관리직 26.2%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연봉제가 주로 사무직 위주로 적용되고 있음.

[그림 3] 중소기업 연봉제 적용대상

(단위: %)



IV. 개선방향

○ 다른 임금통계와의 차이 개선

- 표본추출방법의 차이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는 노동부 통계와 비교하여 변화방향은 대체로 일치하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남.
- 1998년의 경우 노동부 「매월노동통계조사」의 임금상승률은 3.2%였으나 「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」는 -5.0%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였고, 2000년에는 「매월노동통계조사」가 12.8%였던 반면, 「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」는 17.0%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.
- 경기변화에 따른 임금변화폭이 「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」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

○ 조사시점 연말로 변경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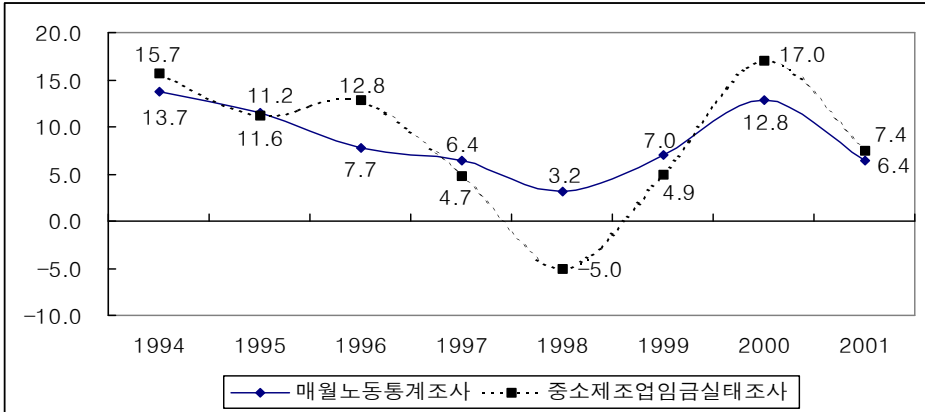
- 1992년 이후 조사시점을 9월로 정한 이유는 당시의 임금타결률이 9월 현재 90% 이상 이루어졌기 때문
- 그러나 최근의 임금타결률은 임금교섭시기의 변화로 인해 진행속도가 1992년 당시와 많은 차이가 있음.
- 2002년 9월 현재 임금타결률은 77.0%에 불과함으로써 9월 조사의 타당성이 약

화됨.

- 따라서 조사시점을 타결률이 90% 이상이 되는 12월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.

[그림 4] 「매월노동통계조사」와 「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」의 임금상승률 추이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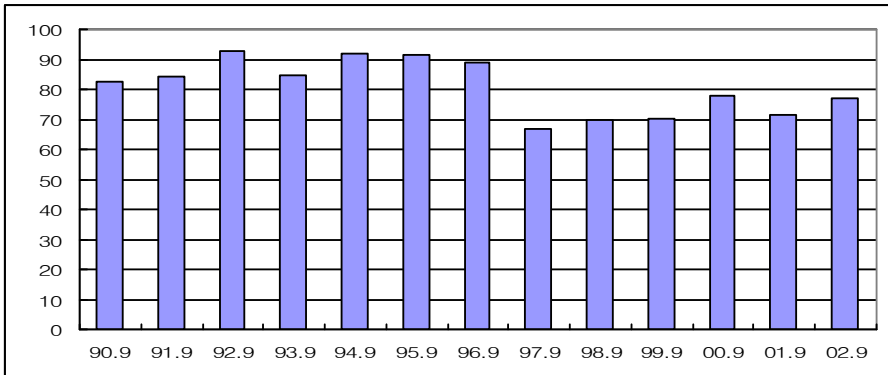
주: 1) 비교대상의 통일을 위하여 자료범위를 제조업체 중 100~299인 규모 사업체의 정액+초과급여 상승률로 일치시킴.

2) 두 자료 모두 9월 통계임.

자료: 노동부, 『매월노동통계조사』, 각호.

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, 『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』, 각호.

[그림 5] 임금교섭 타결률 추이



자료: 노동부.

○ 보다 다양한 내용의 조사

- 현재 조사는 임금관련 자료만 파악하고 있으나,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

필요

- 근로시간 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근로시간 파악 이외에도 시간당 임금을 산출할 수 있음.
- 이밖에 중소기업체의 주5일제 도입 현황 및 주5일제의 도입 형태,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상급단체 현황 등을 다양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음.

○ 20인 미만 영세사업체 조사

- 현재 조사대상이 20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20인 미만의 영세규모 사업체에 대한 임금실태 현황 파악 불가능
- 최초 조사 후 1995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체 대상이었으나 이후 20인 이상으로 변경됨.
- 조사범위를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앞으로 조사대상 사업체를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

○ 조사범위 세분화

- 현재의 산업별, 직종별, 규모별 임금실태 조사 이외에 성별, 연령별 임금실태도 조사 필요
- 이를 통해 중소기업체의 근로자 특성별 임금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임금정책 수립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.

<참고> 중소기업 임금실태조사표

※ 본 조사는 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」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구매계약 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을 할 때 생산직 근로자의 노무비 산정기준 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일반사항

회 사 명	대표자	주 소			종사자수	()명
주생산품	노동조합	①유	②무	전화	팩스	

2. 급여총액(2002. 9월 중 지급한 임금)

(단위 : 명, 원)

	종사 자수	9월 급여총액 (①+②+③+ ④+⑤)	기본급 ①	통상적 수당 ②			기타수당 ③	초과근로수당 ④ (야간수당 등)	특별급여 ⑤ (상여금 등)
				위험 수당	생산장 려수당	자격 수당			
생산직									
사무직 및 기타									
합 계									

- ① 본 조사는 2002. 9월 중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재하되, 대표자, 외국인산업연수생,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합니다
- ② 통상적 수당의 위험수당은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, 생산장려수당은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, 자격수당은 기술 및 자격·면허증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기재합니다.
- ③ 기타 수당은 일부 수혜자에게만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을 기재합니다(통근수당, 연월차수당, 월동수당, 급식수당 등).
- ④ 초과근로수당은 정상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재합니다(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 등).
- ⑤ 특별급여는 급여지급 관계규정과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기재합니다(상여금, 성과급 등).

2-1. 귀사의 주된 임금지불 형태는(임금대상상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)?

- ☐ 생산직() ☐ 사무직()
- ① 시간급제 ② 일급제 ③ 일당월급제 ④ 월급제 ⑤ 연봉제 ⑥ 기타()

3. 2002. 9월 중 지급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(일급)현황(초과근로수당, 상여금, 성과급 등은 제외)

- ※ 2002. 9월 중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를 모두 기재하되, 외국인산업연수생,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합니다
- ※ 1일 8시간 기준이며, 월급제인 경우 1월 25일로 환산하여 기재하며,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자의 최저임금('02.9월~'03.8월 적용)은 일급 18,200원입니다.
- ※ 직종코드란은 뒷면 「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」을 참조 기재하고, 해당직종이 없는 경우 유사 직종 코드를 기재합니다(신규 직종은 직종코드란에 기재)
- ※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주된 직종을 기재하고 「도급제」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(단위 : 명, 원)

직종코드	직종명	총인원	총근로일수 ①	총지금액 (②+③)	기본급 ②	통상적 수당 ③			평균일급 (②+③)/①	최고일급	최저일급
						위험수당	생산장려수당	자격수당			
합 계											
신규직종해설											

<p>● 총인원, 총근로일수, 총지급액, 평균일급, 최고일급, 최저일급 작성요령(초과근로수당, 상여금, 성과급 등은 제외)</p> <p>※ 총인원은 해당직종의 총인원수, 총근로일수는 해당직종 총인원의 근무일수의 합계, 총지급액은 해당직종 총인원의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, 평균일급은 해당직종 총인원의 평균일급, 최고일급은 해당직종 중 가장 높은 일급, 최저일급은 가장 낮은 일급을 기재합니다</p>	
<p>◆ 귀사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 월급제로 지급되는 경우는 1월 25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재하고, 시간급제로 지급되는 경우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며 일급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기재합니다</p>	
<p>◆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 월급제로 지급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</p> <p>· 프레스공 갑과 을이 한달 일하고 갑이 1,000,000원, 을이 800,000원 받을 때</p> <p>- 개인별 일급 :</p> <p>갑의 일급 : 1,000,000원/25일=40,000원 을의 일급 : 800,000원/25일=32,000원</p> <p>☞총인원: 2인 ☞총근로일수 : 25일+25일=50일 ☞총지급액 : 1,000,000원+800,000원=1,800,000원(초과근로수당과 상여금 제외) ☞평균일급 : 1,800,000원÷50일=36,000원 ☞최고일급 : 40,000원(갑의 일급) ☞최저일급 : 32,000원(을의 일급)</p>	<p>◆ 일정기간 활용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</p> <p>· 밀링공 갑이 10일 일하고 300,000원, 을이 8일 일하고 180,000원 받을 때</p> <p>- 개인별 일급 :</p> <p>갑의 일급 : 300,000원/10일=30,000원 을의 일급 : 180,000원/8일=22,500원</p> <p>☞총인원 : 2인 ☞총근로일수 : 10일+8일=18일 ☞총지급액 : 300,000원+180,000원=480,000원 ☞평균일급 : 480,000원÷18일=26,667원 ☞최고일급 : 30,000원(갑의 일급) ☞최저일급 : 22,500원(을의 일급)</p>

4. 연봉제 도입현황

<p>1) 귀사의 연봉제 도입현황은 ?</p> <p>[()안에 해당 연도기입]</p> <p>① 이미 도입하였음 ☞ 도입시기는 () 년도)</p> <p>② 도입할 계획이 있음 ☞ 도입할 시기는 () 년도)</p> <p>③ 도입할 계획이 없음</p>	<p>2) 귀사의 연봉제 적용대상은</p> <p>(해당번호 모두 기재)</p> <p>☞도입하고 있는 경우(, , , ,)</p> <p>☞도입할 경우(, , , ,)</p> <p>① 전직원 ② 사무직전체 ③ 사무관리직(과부장 이상) ④ 전문연구직 ⑤ 기술직 ⑥ 생산직 전체 ⑦ 영업판매직 ⑧ 기타()</p>
---	---